

# 2025년도 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

의안 번호	375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4.11.21.  
제출자 : 평창군수

## 1. 제안이유

2025년도 평창군기금운용계획(안)을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하고 평창군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으려 하는 것임.

## 2 주요골자

가. 2025년도 평창군기금조성 규모는 총 8개 기금 25,733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513백만원이 증가하였음.

나. 기금별 규모는 다음과 같음.

(단위:천원)

기금명	2024년도 말 조성액①	2025년 운용계획		2025년도 말 조성액 ④=①+②-③	증감 ⑤=④-①
		수입 ②	지출 ③		
합계(8개 기금)	25,220,259	4,313,808	3,800,714	25,733,353	513,094
통합재정안정화기금 (통합계정)	78,829	2,502	0	81,331	2,502
통합재정안정화기금 (재정안정화계정)	11,531,048	366,088	0	11,897,136	366,088
자활기금	515,008	15,805	28,000	502,813	△12,195
고향사랑기금	662,809	302,000	0	964,809	302,000
체육진흥기금	2,205,880	552,000	852,000	1,905,880	△300,000
옥외광고발전기금	218,824	29,420	0	248,244	29,420
재난관리기금	1,182,228	529,278	650,000	1,061,506	△120,722
식품진흥기금	113,899	33,608	31,746	115,761	1,862
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	8,711,734	2,483,107	2,238,968	8,955,873	244,139

\* 수입 : 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 상환은 제외 / 지출 : 예치금 및 예탁금은 제외

\* 융자금은 지출 ③에 포함하여 계상함.

### 3. 관계법령

가.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

## 관계법령 발췌

### □ 지방자치법 제159조 (재산과 기금의 설치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(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(權利)를 말한다)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, 기금의 설치 ·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### 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 · 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-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, 새로운 비목(費目)을 설치할 수 없다.
-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